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87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김태선 · 한준호 · 김주영
정춘생 · 진선미 · 김기표
서미화 · 민병덕 · 김남국
여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u>2026년 12월 31일</u> 이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 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 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u>50만원</u> 을 공제한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9년 12월 31일--- ----- ----- ----- ----- ----- ----- ----- ----- -----100만원-----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